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금융위, 보험업감독규정 개정

- 금융위는 지난 1일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모집 준수사항 및 사망보험금 최소한도 규제 완화, 금리연동형 상품 이율 산정 기준 개선 등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(안)을 의결함.
 - 이는 실손의료보험계약 중복 가입으로 소비자가 보험료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모집 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,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망보험금 및 예정 이율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.
-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피보험자가 이미 동종 상품에 가입하였는지에 대해 확인, 동종 상품 가입 시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명확한 설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.
 - 또한, 고령층의 보험료 납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0세 이내에서 보험료 납입기간을 장기로 설계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달하는 보험상품을 개발 허용함.
 - 그 외 보험종목별로 다양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고, 10년·20년 등의 연 단위 보험료 납입기간을 25개월·50개월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자유화함.
- 이 같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되며,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이율 산정기준 개선 내용에 대해서만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(보험업감독규정 개정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, 7/1)